

# 콘텐츠지원사업개선심의위원회운영지침

제정 2017. 02. 02.

개정 2017. 04. 04.

개정 2018. 08. 06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‘우리원’이라 한다)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,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,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등에 의거 진행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심의·의결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 제도개선 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‘지원사업’이라 함은 진흥원의 설립목적과 임무와 관련된 콘텐츠산업육성 목적으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아 다른 기관이나 사업자 등 과제수행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.
- ‘평가위원’이라 함은 일정자격을 갖추고 콘텐츠지원사업(간접보조사업)의 평가 또는 심의위원 등으로 참여하였거나 내외부 추천에 의해 일정자격을 갖춘 산·학·연 등의 관계자를 말하며, 우리원 평가위원 인력 Pool ‘등록 평가위원’과 ‘미등록 평가위원’으로 구분한다.

## 제 2 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평가위원 인력 Pool 분류체계 개선 등 운영·관리 및 평가위원 등록·배제
2. 평가위원 자격 및 참여제한 사유
3. 평가위원 선정절차 및 지원사업 진행절차
4.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제도 운영방식 등 제도개선
5. 기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제도 운영과 관련한 일반사항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심의위원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전략부원장이 되고, 위원은 산업부원장 및 본부장, 청렴감사실장, 심사평가지원팀장이 된다. <개정 2017.4.4.> <개정 2018.8.6.>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산업부원장,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8.8.6.>

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.

⑤ 위원회는 회의의 진행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전략기획팀장으로 한다. 간사는 회의의 의안작성, 회의록, 기타 관련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8.8.6.>

⑥ 위원장은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우리원 지원사업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제도에 정통한 외부 심의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회 개최)**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.

1. 정기회 : 반기별 1회(연 2회)
  2.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  3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② 위원장은 논의 안건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

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   심의 및 의결

**제6조(위원회의 출석, 심의·의결)** ①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 7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② 위원회는 부득이 회의소집이 곤란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진행할 수 있다. 단, 서면심의에 의하는 경우에도 전항과 동일하며, 심의결과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**제7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별표 제1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8조(회의의 비공개)**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. 단, 회의결과는 공개로 한다.

**제9조(재심)** 위원회는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도 재차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### 제 4 장    보 칙

**제10조(위임)** 기타 지원사업 제도개선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결제를 득하여, 내부 보고자료에 의할 수 있다.

### 부   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17년 02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준하여 적용된 것으로 한다.

**부 칙(2017.4.4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콘텐츠지원사업 개선 심의위원회 회의록

콘텐츠지원사업 개선 심의위원회 회의록

안 건	
일 시	
장 소	
심의위원	
개요	
회의진행 경과	
최종심의 결과	
첨부문서	
참석자	

한국콘텐츠진흥원

[별표 2] 콘텐츠지원사업 개선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<개정 2018.8.6.>

### 콘텐츠지원사업 개선 심의위원회 위원명단

구 분	성 명	직 책	소 속
위원장		부원장	전략부원장
당연직 (본부장)		부원장	산업부원장
		본부장	경영본부
		본부장	기업·인재양성본부
		본부장	문화기술본부
		본부장	게임본부
		본부장	방송본부
		본부장	대중문화본부
		본부장	해외사업본부
		본부장	정책본부
		실장	청렴감사실
당연직 (팀장)		팀장	심사평가지원팀

※ 간사 : 전략기획팀장